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제정 1999.01.27
개정 1999.09.09
개정 2000.12.23
개정 2001.04.14
개정 2001.07.17
개정 2001.08.25
개정 2004.07.08
개정 2005.01.27
개정 2005.09.16
개정 2007.01.19
개정 2007.04.06
개정 2007.07.09
개정 2008.03.26
개정 2011.03.11
개정 2011.03.25
개정 2011.06.09
개정 2012.04.06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사무소
제4조 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기본재산
제6조 중요재산의 처분 및 취득

- 제7조 운영 재원
- 제8조 사업년도
- 제9조 사업계획서 등
- 제10조 결산서 등
- 제11조 잉여금의 처분

제3장 임 원

- 제12조 임원
- 제13조 이사
- 제14조 이사의 임기
- 제15조 이사장
- 제16조 원장
- 제17조 감사
-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 제19조 신분보장

제4장 이사회

- 제20조 이사회 구성
- 제21조 이사회 의결사항
- 제22조 이사회 소집 등
- 제23조 이사회 간사
- 제24조 이사회 의사록
- 제25조 소위원회 설치

제5장 직 원

- 제26조 직원의 임면 등

제6장 직제 및 위원회

- 제27조 직제

제28조 <삭제 2012.4.6>

제29조 자문위원회 등

제7장 보 칙

제30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31조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제32조 정관의 변경

제33조 이사회 규칙

제34조 규정의 제정

제35조 해산

제36조 공고

부 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관

개정 2012.04.0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01.7.17>

제2조(목적)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 및 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7.17, 2005.1.27, 2012.4.6>

제3조(사무소) ① 기획평가원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분원, 부설기관, 해외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4.7.8>

② 제1항에 따른 분원, 부설기관, 해외사무소 등의 설치를 위한 부지 및 건물의 확보, 인력 및 예산운영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7.17, 2004.7.8>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원, 부설기관, 해외사무소 등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각각에 관한 별도 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7.7.9>

④ <삭제 2011. 3.25>

제4조(사업) ① 기획평가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9조의7제1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기본법 제9조의7제5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3.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4.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발전 추세의 예측
 5.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확립
 7.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8.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위탁하는 사업
 9. 전 각 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수익사업
 11. 기타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수탁사업
- ②기획평가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6]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5조(기본재산)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개정 2001.7.17>

1. 설립당시의 설립자 출연금
2. 설립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인수받은 재산
3. 대한민국정부, 국내·외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출연·보조·기부받은 토지·건물·기자재·금전
4.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6조(중요재산의 처분 및 취득) 기획평가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장기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7.17, 2004.7.8>

1. 토지 및 건물(매입, 임차, 무상양여를 포함한다)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주요재산

제7조(운영 재원) 기획평가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출연금·용역수입·차입금·기본재산에서 생긴 과실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01.7.17>

제8조(사업년도) 기획평가원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2001.7.17>

제9조(사업계획서 등) ①기획평가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 사업년도 개시일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7.17, 2008.3.26, 2011.6.9>

②예산총칙으로서 원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산서 등) ①원장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서를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 2011.6.9>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계획 대 실적대비표, 감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거나 제충당금 등에 적립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①기획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2001.7.17>

②제1항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00.12.23>

제13조(이사) ①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로 본다.<개정 1999.9.9, 2001.7.17, 2001.8.25, 2008.3.26, 2011.6.9>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장<개정 2005.1.27, 2008.3.26, 2011.3.21, 2011.6.9>

2.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개정 2005.9.16, 2008.3.26>

3. 삭제<2008.3.26>

4. 원장

②당연직이사가 아닌 이사는 연구계·산업계·학계 등 각 분야에서 선임한다.

제14조(이사의 임기) ①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이사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결원이 생긴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그 이사의 임기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개시한다.<개정 2008.3.26, 2011.6.9>

제15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③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장은 이사장에 선임될 수 없다.

제16조(원장) ①원장은 기획평가원을 대표하며, 기획평가원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1.7.17>

②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개최일전에 임기만료 또는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3.26, 2011.6.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그 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1.4.14, 개정 2004.7.8>

⑤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01.4.14, 개정 2004.7.8>

⑥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1.4.14, 개정 2004.7.8>

⑦원장은 기획평가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1.7.17>

⑧원장은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직무능력을 저해하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겸직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07.1.19><개정 2008.3.26, 2011.6.9>

제17조(감사) ①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6, 2011.6.9>

②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개최일전에 임기만료되었을 때에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개시한다.
<개정 2008.3.26, 2011.6.9>

④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 2011.6.9>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의2(임원의 보수) ①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6]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획평가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전문개정 2012.4.6]

제19조(신분보장)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개정 2001.7.17>

1. 법령·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에 위반되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획평가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제4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1년을 초과하는 장기차입금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 또는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8. 중요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9. 부설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1. 전 각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원장·감사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개최전일까지 본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⑥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2.4.6>

⑦이사회 의결사항 중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2.4.6>

⑧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6>

⑨원장은 이사회에 기획평가원의 운영·기관평가 및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1.7.17, 2012.4.6>

제23조(이사회 의 간사) 이사회 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기획평가원의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7.17>

제24조(이사회 의 의사록) 이사회 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5조(소위원회 설치) ①이사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이사회 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 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이사회 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직 원

제26조(직원의 임면 등) ①기획평가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01.7.17>

②원장은 계약에 의하여 직원을 임용한다.

③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직제 및 위원회

제27조(직제) 기획평가원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1.7.17>

제28조 <삭제 2012.4.6>

제29조(자문위원회 등) 원장은 기획평가원을 운영함에 있어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1.7.17>

제7장 보 칙

제30조(비밀엄수의 의무) 기획평가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1.7.17>

제31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기획평가원의 직원이 그 직무수행 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지적재산권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평가원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원에게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1.7.17>

제32조(정관의 변경) ①기획평가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7.17, 2008.3.26, 2011.6.9>
②제1항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3조(이사회 규칙)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4조(규정의 제정) ①<삭제 2012.4.6>

②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기획평가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인사·급여·직제·회계규정 및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1.7.17>

제35조(해산) ①기획평가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7.17,

2008.3.26, 2011.6.9>

②기획평가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이사회외의 별도 의결이 없는 한 그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01.7.17>

제36조(공고)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1999. 1.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년도) 평가원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평가원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외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이사, 감사의 임명) 평가원 설립당시의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 및 감사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하며,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원장의 임명) 평가원의 설립당시의 원장은 설립위원회 추천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6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평가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유의 기능, 사업, 시설, 예산 및 재산 중 평가원에 해당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평가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인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기능, 사업, 시설, 예산 및 재산 등의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연구소의 명칭은 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③평가원의 설립전에 연구소가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평가원이 행하거나 평가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7조(직원의 임용 등) ①원장은 연구소의 직원 등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용 조건에 따라 평가원 설립당시 직원으로 임용한다.

②평가원 설립당시의 평가원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은 설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설립을 위하여 아래 명의의 설립자가 현금 일백만(₩1,000,000)원을 출연하며,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설립위원 전원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1999년 1월 25일에 각각 기명 날인함.

設 立 者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장관

강 창 희 (인)

定款 作成者

韓國科學技術評價院 設立委員

과학기술부 차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소장
LG기술원 원장
하나로통신(주) 부사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포항공대 총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송 옥 환 (인)
전 의 진 (인)
장 문 호 (인)
김 창 수 (인)
김 정 덕 (인)
이 장 무 (인)
정 성 기 (인)
정 명 세 (인)
박 원 훈 (인)

부 칙<1999. 9.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정관의 시행일 현재 평가원에 재임중인 감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임기동안 상근으로 한다.

부 칙<2001. 4.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관

부 칙<2001. 7.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까지 평가원이 행한 행위 또는 평가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기획평가원이 행하거나 기획평가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 칙<2001. 8.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기획평가원이 시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9.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기획평가원이 시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기획평가원이 시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4.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기획평가원이 시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7.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폐지) 기관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요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관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를 “업무성격에 따라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③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④직제및직무분장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7호”를 “제11호”로 한다.